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우 5462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87(남중동) / ☎ 857-3535~7 / FAX 857-3539
회원사업부장 정진수 과장 김효진 담당 오준영 iksan@korcham.net, http://iksancci.korcham.net

문서번호 익상회 제28호

시행일자 2024. 3. 8

수 신 회원업체 대표

참 조 총무 및 회계담당 부서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 . .	결 재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 목 “2023년도 회원대장” 자료 제출 협조요청

1. 상공회의소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익산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상공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상공회의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공회의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대장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꼭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 가. **조사근거** : 상공회의소법 제17조 “회원대장조사”
나. **요청자료** : 회원대장(익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ksancci.korcham.net> 공지사항(876호) 회원대장 양식 다운로드 가능)
다. **제출기한**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라. **제출방법** : 팩스(857-3539) 및 E-mail 송부(iksan@korcham.net)

※(참고) 본 자료제출은 상공회의소법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붙 임 : 회원대장 1부. 끝.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 원



회 원 대 장

(※ 상공회의소법 제17조에 의한 의무사항)

일 반 현 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사업자등록번호 (공장,지점,영업소)	
기 업 규 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예 ☐ 아니오
새 주 소			
대 표 전 화		대 표 F A X	
회 사 E - mail		주 요 생 산 품	
창 립 기 념 일		종 업 원 수	명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2023.1.1 ~ 6.30)	하 반 기 (2023.7.1 ~ 12.31)	합 계
매 출 액 (과세+영세+면세)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예정 및 확정분)

작 성 자

성 명			부서 / 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익산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사업 및 회원서비스 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근거	동의여부(필수)
상공회의소 사업 및 회원서비스 안내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이메일	수집일로부터 2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

※ 귀하는 상공회의소의 사업 및 회원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 만약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동의]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동의여부(필수)
상공회의소 사업 및 회원서비스 안내	팩스번호, 이메일, 휴대폰	수집일로부터 2년	()

※ 귀하는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 만약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행사 및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명 : (서명)

- 문의 및 접수처 : 회원사업부(Tel : 063-857-3537, Fax : 063-857-3539)

상기와 같이 회원대장을 제출합니다.

2024. 3.



상공회의소 법령 안내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온 주역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단체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주요내용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0조의2(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 5억원
3. 시·군에 소재하는 자 : 2억5천만원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 익산상의 회비규정 제4조(회비)

② 당연가입회원의 회비는 그 회원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 이하 같다.)에 1,000분의 3.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17조(회원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및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및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 및 준회원의 특허·기술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